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설명자료

2025. 1.

양형위원회

I. 개요

- 의견조회 및 공개 대상인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의 주요 내용 및 검토사항 등을 소개하여, 이해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연혁
 - 2019. 3. 25. 설정, 2019. 7. 1. 시행
 - 그 후 수정은 양형기준 정비 결과에 따른 양형기준 전반에 걸친 정비(2023. 4. 24. 수정, 2023. 7. 1. 시행)
- 수정 배경
 - 이른바 ‘대포통장’을 거래하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는 각종 범죄에서 범죄수익의 취득 및 은닉을 가능하게 하는 범죄임.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와의 연계성이 크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증가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에 관한 관심도 높아짐
 -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은 2019년 설정·시행된 이후 2020. 5. 19. 법률 제17297호 전자금융거래법의 개정(2020. 8. 20. 시행, 이하 ‘개정법’)을 통해 법정형이 상향되고 구성요건이 신설되어 양형기준의 수정이 필요함
 - 설정 대상 범죄의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기존 3년 ↓ 징역 or 2천만 원 ↓ 벌금)으로 상향됨

- 제49조 제4항 제5호(계좌와 관련된 정보 제공·보관·전달·유통) 등이 신설됨

■ 수정 경과

- 2023. 6. 12. 제125차 양형위원 회의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수정을 제9기 양형위원회 추진 업무로 의결
- 2024. 4. 29. 제131차 양형위원 회의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수정 심의(설정 범위, 유형 분류)
- 2024. 9. 30. 제134차 양형위원 회의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수정 심의(권고 형량범위,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 2025. 1. 13. 제136차 양형위원 회의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의결
- 2025. 1. ~ 2025. 2. 관계기관 의견조회 및 의견 수렴을 위한 홈페이지 공개
- 2025. 2. 17.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 예정
- 2025. 3. 양형위원회에 접수된 의견 검토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수정 양형기준 최종 의결 예정

(이하 여백)

II.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설정 범위

1. 고려 사항

- ▣ 범죄의 발생 빈도와 그 사회적 영향 정도, 법정형과 죄질, 국민의 법 감정과 국민적인 관심도, 범죄의 성격상 양형기준 설정에 적합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 대상을 결정함
- ▣ 다만 선고사례가 많지 않더라도 행위 유형, 법정형과 죄질,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인정되는 범죄, 법정형이 상대적으로 높고 유사범죄를 참조하여 양형기준 설정이 비교적 용이 할 것으로 예상되는 범죄는 설정 대상에 포함함

2. 설정 범위

- ▣ 기존 설정 범죄(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더하여, 기존 설정 범죄와의 관련성, 사건 수 등을 고려하여, 같은 항 제5호의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추가 설정하기로 함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전달·유통한 자	
	제3호	제6조 제3항 제4호를 위반한 질권설정자 또는 질권자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를 위반하여 알선·중개·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를 한 자	
	제5호	제6조의3을 위반하여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자 또는 보관·전달·유통한 자	

- 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되어 법정형

이 상향된 것과 아울러 계좌 관련 정보를 제공·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됨

- 기존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4호 위반죄가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같은 항 제5호 위반죄도 설정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체계에 부합함
- 연도별 사건 수(2020. 8. 20.부터 2023. 6. 30.까지 개정법 제49조 제4항이 적용되어 확정된 단일 및 동종경합범)¹⁾

단위: 명, %

세부법조			선고년도				전체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전자금융 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수	12	38	63	37	150	
		비율	8.0	25.3	42.0	24.7	100.0	
	제49조 제4항 제2호	수	11	112	193	89	405	
		비율	2.7	27.7	47.7	22.0	100.0	
	제49조 제4항 제3호	수	-	-	-	2	2	
		비율	-	-	-	100.0	100.0	
	제49조 제4항 제4호	수	-	2	9	10	21	
		비율	-	9.5	42.9	47.6	100.0	
	제49조 제4항 제5호	수	-	2	10	9	21	
		비율	-	9.5	47.6	42.9	100.0	
	전체		수	23	154	275	147	599
			비율	3.8	25.7	45.9	24.5	100.0

(이하 여백)

1)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 「제9기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수정/설정 대상범죄 분석 II - 보험 및 통신사기범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75쪽.

Ⅲ.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유형 분류

1. 유형 분류의 일반 원칙

- 유사한 속성을 가지거나 유사한 형사책임을 지우는 것이 합당한 범죄들을 하나의 유형 내에 포함시켜야 함
- 개별 범죄군의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해당 범죄가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가급적 단순화할 필요가 있음
- 해당 유형에 속한 범죄들의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양형인자들은 공통되어야 함

2. 유형 분류안

가. 논의의 전제

- ▣ 유사한 특성을 가진 범죄를 같은 대유형으로 묶음 ⇨ 양형인자 공통
- ▣ 법정형이 유사한 범죄를 같은 소유형으로 묶음 ⇨ 형량범위 공통

나. 유형 분류안 설명

- ▣ 현행 소유형 분류의 설정 연혁 ⇨ 양형기준 설정 당시 논의는 현재에도 유효함
- 실무상 단순 범행과 조직적 범행 사이에 형량범위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 범행이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범행 대상 접근매체를 매개로 보이스피싱 등 후속범행이 이루어져 불특정 다수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개연성 및 비난가능성이 현저히 크므로 행위방식(일반 /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을 소유

형의 기준으로 삼아 구분할 필요성이 있음

- 위와 같은 사유로 양형위원회에서 현행 소유형 분류가 채택되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이 2019년에 설정되었음
- ▣ 적용대상인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법정 형은 동일하고 범죄유형별 형량범위의 폭이 크지 않아 별도 유형 분류 필요성이 낮음
- 세부법조별 형량 분포(2020. 8. 20.부터 2023. 6. 30.까지 개정법 제 49조 제4항이 적용되어 확정된 단일 및 동종경합범)²⁾

단위: 명, %, 월

세부법조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2	3	4	5	6	7	8	10	12	14	16	18	20	22	24	30	36	42		
제49조 제4항 제1호	수	2	3	31	3	51	1	20	13	19	-	1	3	-	1	1	1	-	-	150	7.53
	비율	1.3	2.0	20.7	2.0	34.0	0.7	13.3	8.7	12.7	-	0.7	2.0	-	0.7	0.7	0.7	-	-	100.0	
제49조 제4항 제2호	수	6	8	61	3	125	-	54	48	57	3	1	23	2	1	9	2	1	1	405	8.71
	비율	1.5	2.0	15.1	0.7	30.9	-	13.3	11.9	14.1	0.7	0.2	5.7	0.5	0.2	2.2	0.5	0.2	0.2	100.0	
제49조 제4항 제3호	수	-	-	-	-	2	-	-	-	-	-	-	-	-	-	-	-	-	-	2	6.00
	비율	-	-	-	-	100.0	-	-	-	-	-	-	-	-	-	-	-	-	-	100.0	
제49조 제4항 제4호	수	-	-	-	-	11	-	1	1	2	1	1	2	2	-	-	-	-	-	21	10.19
	비율	-	-	-	-	52.4	-	4.8	4.8	9.5	4.8	4.8	9.5	9.5	-	-	-	-	-	100.0	
제49조 제4항 제5호	수	-	-	5	-	4	-	1	1	6	1	-	3	-	-	-	-	-	-	21	9.62
	비율	-	-	23.8	-	19.0	-	4.8	4.8	28.6	4.8	-	14.3	-	-	-	-	-	-	100.0	
전체	수	8	11	97	6	193	1	76	63	84	5	3	31	4	2	10	3	1	1	599	8.49
	비율	1.3	1.8	16.2	1.0	32.2	0.2	12.7	10.5	14.0	0.8	0.5	5.2	0.7	0.3	1.7	0.5	0.2	0.2	100.0	

- 법률 개정으로 법정형이 상향된 부분은 권고 형량범위에서 반영하고, 새로이 설정 대상에 포함된 범죄(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2)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 「제9기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수정/설정 대상범죄 분석 II - 보험 및 통신사기범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77쪽.

제5호)는 기존 유형 분류에 포섭하는 것으로 충분함

- **법정형, 형량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양형기준의 유형 분류를 유지하기로 함**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적 범행			
2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이하 여백)

IV.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 권고 형량범위

1. 고려사항

▣ 권고 형량범위 설정 방식

- 양형기준은 전형적 사건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역할을 함 ⇨ 양형실무에 대한 통계분석을 기초로 종전 양형실무의 70~80%를 반영하여 형량범위를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법정형이 동일한 유사한 성격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 형량범위를 참고함
- 다만 양형에 대한 일반 국민의 건전한 인식을 반영하기 위하여, 죄질이 매우 나쁜 유형에서는 일정한 규범적 조정을 통하여 형량범위를 상향하고, 양형기준 전체의 체계 정합성을 고려하여 형량범위를 세부 조정함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가. 유형의 정의

▣ 일반적 범행(제1유형)

- 제2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행위

▣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제2유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행위를 업으로 하거나,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을 목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또는 다른 범죄(예를 들면 보이스피싱, 불법도박사이트 운영 등)에 이용할 목적으

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행위를 한 경우를 의미함

나. 형량 분포

1) 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개정법)되기 전의 전자금융거래법이 적용된 사건

▣ 2020년도 양형기준 적용대상 사건³⁾

단위: 명, %

유형		형량(월)																				전체	
		1	2	3	4	5	6	7	8	9	10	12	14	15	16	18	22	24	30	36	42		48
제1 유형	수	1	11	33	550	14	533	2	148	-	86	81	9	-	7	40	-	17	2	2	1	1	1,538
	비율	0.1	0.7	2.1	35.8	0.9	34.7	0.1	9.6	-	5.6	5.3	0.6	-	0.5	2.6	-	1.1	0.1	0.1	0.1	0.1	100.0
제2 유형	수	-	-	2	6	3	42	-	55	2	46	122	9	1	5	53	2	21	12	5	1	-	387
	비율	-	-	0.5	1.6	0.8	10.9	-	14.2	0.5	11.9	31.5	2.3	0.3	1.3	13.7	0.5	5.4	3.1	1.3	0.3	-	100.0
전체	수	1	11	35	556	17	575	2	203	2	132	203	18	1	12	93	2	38	14	7	2	1	1,925
	비율	0.1	0.6	1.8	28.9	0.9	29.9	0.1	10.5	0.1	6.9	10.5	0.9	0.1	0.6	4.8	0.1	2.0	0.7	0.4	0.1	0.1	100.0

● 최빈값과 평균형량이 모두 기본영역 내에 포함됨

- 제1유형: 평균형량 6.6월 / 최빈값 4월, 6월, 8월 순
- 제2유형: 평균형량 12.9월 / 최빈값 12월, 8월, 18월 순

(이하 여백)

3)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 「2020년 양형기준 적용현황분석 II」, 1566면, 권고 형량범위(감경·기본·가중영역)는 표에서 음영으로 표시함.

■ 2021년도 양형기준 적용대상 사건4)

단위: 명, %

유형		형량(월)																		전체			
		2	3	4	5	6	8	9	10	12	14	15	16	18	22	24	30	34	36		42	48	60
제1 유형	수	8	2	89	4	107	38	-	41	35	7	1	2	19	1	6	2	-	2	1	-	-	365
	비율	2.2	0.5	24.4	1.1	29.3	10.4	-	11.2	9.6	1.9	0.3	0.5	5.2	0.3	1.6	0.5	-	0.5	0.3	-	-	100.0
제2 유형	수	-	-	2	-	5	12	1	9	25	3	-	1	8	1	6	3	1	3	-	1	1	82
	비율	-	-	2.4	-	6.1	14.6	1.2	11.0	30.5	3.7	-	1.2	9.8	1.2	7.3	3.7	1.2	3.7	-	1.2	1.2	100.0
전체	수	8	2	91	4	112	50	1	50	60	10	1	3	27	2	12	5	1	5	1	1	1	447
	비율	1.8	0.4	20.4	0.9	25.1	11.2	0.2	11.2	13.4	2.2	0.2	0.7	6.0	0.4	2.7	1.1	0.2	1.1	0.2	0.2	0.2	100.0

● 최빈값과 평균형량이 모두 기본영역 내에 포함됨

- 제1유형: 평균형량 8.2월 / 최빈값 6월, 4월, 10월 순
- 제2유형: 평균형량 15.1월 / 최빈값 12월, 8월, 10월 순

■ 2022년도 양형기준 적용대상 사건5)

단위: 명, %

유형		형량(월)														전체	
		2	4	5	6	7	8	10	12	16	18	22	24	30	36		60
제1유형	수	1	4	1	33	-	14	17	11	2	2	1	4	1	-	1	92
	비율	1.1	4.3	1.1	35.9	-	15.2	18.5	12.0	2.2	2.2	1.1	4.3	1.1	-	1.1	100.0
제2유형	수	1	1	-	4	1	8	5	19	-	6	1	4	1	1	1	53
	비율	1.9	1.9	-	7.5	1.9	15.1	9.4	35.8	-	11.3	1.9	7.5	1.9	1.9	1.9	100.0
전체	수	2	5	1	37	1	22	22	30	2	8	2	8	2	1	2	145
	비율	1.4	3.4	0.7	25.5	0.7	15.2	15.2	20.7	1.4	5.5	1.4	5.5	1.4	0.7	1.4	100.0

● 최빈값과 평균형량이 모두 기본영역 내에 포함됨

- 제1유형: 평균형량 9.9월 / 최빈값 6월, 10월, 8월 순
- 제2유형: 평균형량 13.8월 / 최빈값 12월, 8월, 18월 순

4)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 「2021년 양형기준 적용현황분석 II」, 1378면, 권고 형량범위(감경·기본·가중영역)는 표에서 음영으로 표시함.

5)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 「2022년 양형기준 적용현황분석 II」, 1410면, 권고 형량범위(감경·기본·가중영역)는 표에서 음영으로 표시함.

2) 개정법 적용 사건

▣ 세부법조별 형량 분포(2020. 8. 20.부터 2023. 6. 30.까지 개정법 제49조 제4항이 적용되어 확정된 단일 및 동종경합범)⁶⁾

단위: 명, %, 월

세부법조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2	3	4	5	6	7	8	10	12	14	16	18	20	22	24	30	36			42
제49조 제4항 제1호	수	2	3	31	3	51	1	20	13	19	-	1	3	-	1	1	1	-	-	150	7.53
	비율	1.3	2.0	20.7	2.0	34.0	0.7	13.3	8.7	12.7	-	0.7	2.0	-	0.7	0.7	0.7	-	-	100.0	
제49조 제4항 제2호	수	6	8	61	3	125	-	54	48	57	3	1	23	2	1	9	2	1	1	405	8.71
	비율	1.5	2.0	15.1	0.7	30.9	-	13.3	11.9	14.1	0.7	0.2	5.7	0.5	0.2	2.2	0.5	0.2	0.2	100.0	
제49조 제4항 제3호	수	-	-	-	-	2	-	-	-	-	-	-	-	-	-	-	-	-	-	2	6.00
	비율	-	-	-	-	100.0	-	-	-	-	-	-	-	-	-	-	-	-	-	100.0	
제49조 제4항 제4호	수	-	-	-	-	11	-	1	1	2	1	1	2	2	-	-	-	-	-	21	10.19
	비율	-	-	-	-	52.4	-	4.8	4.8	9.5	4.8	4.8	9.5	9.5	-	-	-	-	-	100.0	
제49조 제4항 제5호	수	-	-	5	-	4	-	1	1	6	1	-	3	-	-	-	-	-	-	21	9.62
	비율	-	-	23.8	-	19.0	-	4.8	4.8	28.6	4.8	-	14.3	-	-	-	-	-	-	100.0	
전체	수	8	11	97	6	193	1	76	63	84	5	3	31	4	2	10	3	1	1	599	8.49
	비율	1.3	1.8	16.2	1.0	32.2	0.2	12.7	10.5	14.0	0.8	0.5	5.2	0.7	0.3	1.7	0.5	0.2	0.2	100.0	

- 전체 평균형량(8.49월)이 제1, 2유형의 기본영역 내에 포함됨
- 유형별 평균형량 및 최빈값
 - 제1유형: 평균형량 6.99월 / 최빈값 6월, 4월, 8월 순
 - 제2유형: 평균형량 11.37월 / 최빈값 12월, 6월, 18월 순
- 통계상 양형기준의 상한을 이탈한 판결은 그 사례가 적고, 양형실무 관점에서는 현행 형량범위 변경 필요성은 크지 않음

6)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 「제9기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수정/설정 대상범죄 분석 II - 보험 및 통신사기범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77쪽.

다. 징역형이 5년 이하로 동일한 범죄군의 권고 형량범위

1) 개인 및 국가·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 유사수신행위범위반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비조직적 범행	- 8월	4월 - 1년	8월 - 2년
2	조직적 범행	- 10월	6월 - 1년6월	1년 - 4년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		유사수신행위법 제6조 제1항	5년 이하

■ 위증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위증	- 10월	6월 - 1년6월	10월 - 3년
	위증		형법 제152조 제1항	5년 이하
	특허법위반		특허법 제227조 제1항	5년 이하
	실용신안법위반		실용신안법 제47조 제1항	5년 이하
	디자인보호법위반		디자인보호법 83조 제1항 →제221조 1항으로 변경	5년 이하
	상표법위반		상표법 제94조 1항 →제232조 1항으로 변경	5년 이하

■ 공무집행방해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8월	6월 - 1년6월	1년 - 4년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		형법 제136조 제1항	5년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		형법 제136조 제2항	5년 이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범죄를 범한 경우		형법 제144조 제1항	1/2 가중
2	위계공무집행방해	4월 - 10월	8월 - 1년6월	1년 - 3년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		형법 제137조	5년 이하

■ 개인정보등 침해행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2	개인정보·신용정보·위치정보 무단 이용 등	- 8월	6월 - 1년6월	1년 - 3년6월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 목적 범위 외임에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그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음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5년 이하

2) 국가·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 사문서위조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사문서 위조·변조 등	- 1년	6월 - 2년	1년 - 3년
사문서 등 위조·변조 및 동 행사		형법 제231조, 제234조	5년 이하
자격모용 사문서 등 작성 및 동 행사		형법 제232조, 제234조	5년 이하
사전자기록 위작·변작 및 동 행사		형법 제232조의2, 제234조	5년 이하

■ 복표 발매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복권 발행, 복표 발매·중개	4월 - 10월	6월 - 1년6월	1년 - 3년
	복표 발매		형법 제248조 제1항	5년 이하
	복표 발매 중개		형법 제248조 제2항	3년 이하
	복권 발행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4조 제1항 제1호	3년 이하
2	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4월 - 10월	8월 - 1년6월	1년 - 3년6월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영업		사행행위규제법 제30조 제1항 제1호	5년 이하
	무허가 카지노업		관광진흥법 제81조 제1호	5년 이하
3	도박장소·공간 개설	4월 - 10월	8월 - 1년6월	1년 - 4년
	영리 목적 도박장소·공간 개설		형법 제247조	5년 이하

■ 뇌물공여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3,000만 원 미만	- 6월	4월 - 10월	6월 - 1년6월
2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6월 - 1년	10월 - 1년6월	1년 - 3년
3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1년 - 2년	1년6월 - 2년6월	2년 - 4년
4	1억 원 이상	2년 - 3년	2년6월 - 3년6월	3년 - 5년
	뇌물(공여, 공여약속, 공여의사표시)		형법 제133조 제1항	5년 이하
	제3자뇌물(교부, 취득)		형법 제133조 제2항	5년 이하

3)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 저작권침해행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저작권재산권침해	- 10월	8월 - 1년6월	1년 - 3년
	저작권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 권리 제외) 등 침해행위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5년 이하

■ 존속협박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협박	- 8월	2월 - 1년	4월 - 1년6월
	협박		형법 제283조 제1항	3년 이하
	존속협박		형법 제283조 제2항	5년 이하
	공동협박·공동존속협박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1호, 제2호	1/2 가중
	상습협박·상습존속협박		형법 제285조	1/2 가중
	운전자 협박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 제1항	5년 이하

■ 강요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강요	- 8월	6월 - 1년	10월 - 2년
	강요		형법 제324조 제1항	5년 이하
	공동강요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2호	1/2 가중
	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		청소년성보호법 제16조 아동학대처벌법 제60조	7년 이하

■ 업무방해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업무방해	- 8월	6월 - 1년6월	1년 - 3년6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		형법 제314조 제1항	5년 이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		형법 제314조 제2항	5년 이하

■ 체포·감금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체포·감금	- 8월	6월 - 1년	8월 - 2년
	체포·감금		형법 제276조 제1항	5년 이하
	존속체포·감금		형법 제276조 제2항	10년 이하
	중체포·감금		형법 제277조 제1항	7년 이하
	중존속체포·감금		형법 제277조 제2항	2년 이상
	공동체포·감금, 공동존속체포·감금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1/2 가중
	특수체포·감금, 특수존속체포·감금, 특수중체포·감금, 특수중존속체포·감금		형법 제278조	1/2 가중
	상습체포·감금, 상습존속체포·감금, 상습중체포·감금, 상습중존속체포·감금		형법 제279조	1/2 가중

▣ 배임수재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3,000만 원 미만	- 6월	4월 - 10월	6월 - 1년6월
2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6월 - 1년	8월 - 1년6월	1년 - 2년6월
3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10월 - 2년	1년 - 2년6월	2년 - 3년6월
4	1억 원 이상	1년6월 - 3년	2년 - 4년	3년 - 5년
	배임수재		형법 제357조 제1항	5년 이하

라. 검토

▣ 다음과 같이 형량범위를 수정함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적 범행	6월 - 8월	4월 - 10월 1년	6월 - 1년2월 8월 - 2년
2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8월 - 10월	6월 - 1년6월	10월 - 2년6월 1년 - 4년

- ▣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의 법정형이 상향되었음(3년 이하의 징역 → 5년 이하의 징역).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 인 범죄군을 참조하여 권고 형량범위를 수정할 필요성이 있음
- ▣ 법정형이 동일하고 소유형 분류의 기준이 유사한 유사수신행위범위 반범죄 등 유사 범죄군의 권고 형량범위, 양형실무, 보이스피싱 범죄 등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범죄의 특수성, 사회적 관심도와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 형량범위를 상향함
-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유형 2)에서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의 경우 최대 5년(법정형 상한)까지 권고함

-
- 양형기준에서는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함(이를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이라고 함). 한편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름
 - 따라서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의 최대형량은 법정 최고형인 5년이 됨($4년 \times 1.5 = 6년$, 법률상 가중을 하지 않은 단일범죄 처단형에서의 특별조정된 가중영역을 전제로 함)

(이하 여백)

V.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양형인자

1. 양형인자 중 수정 부분

가. 특별감경인자

1) ‘단순 가담’ → ‘단순 가담(2유형 중 조직적 범행)’ 으로 수정

▣ 모든 유형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에 대하여 적용되던 특별감경인자인 ‘단순 가담’의 적용범위를 ‘조직적 범행’ 유형으로 제한함

- ‘단순 가담’은 ‘조직적 범행’ 유형의 범죄에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실행을 지휘한 공범을 특별가중하는 대신, 그와 상반되는 매우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공범을 특별감경하기 위한 양형인자임
- 특별가중인자인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와의 균형상 ‘단순 가담’을 ‘조직적 범행’에 한하여 적용하기로 함

나. 일반감경인자

1) 후속범죄에 대한 피해 회복 또는 그 피해자의 처벌불원 ⇨ 신설

▣ ‘후속범죄에 대한 피해 회복 및 처벌불원’을 형사정책적 고려에서 일반감경인자로 추가함

-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는 연쇄적·복합적인 피해를 야기하는 특성이 있음
- ‘후속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폐해가 야기된 경우’에는 일반양형인자로 가중처벌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응하여 ‘후속범죄에 대한

피해 회복 또는 그 피해자의 처벌불원' 을 일반감경인자로 삼기로 함

2. 양형인자표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단순 가담(2유형 중 조직적 범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2유형 중 조직적 범행) ○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또는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내부고발 또는 범행(2유형 중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자발적 거래정지·분실신고 등으로 후속범죄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극가담 ○ 생계형 범죄 ○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후속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피해가 야기된 경우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적 수사협조 ○ 후속범죄에 대한 피해 회복 또는 그 피해자의 처벌불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VI.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2유형 중 조직적 범행) ○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또는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단순 가담(2유형 중 조직적 범행) ○ 자수, 내부고발 또는 범행(2유형 중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자발적 거래정지·분실신고 등으로 후속 범죄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후속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피해가 야기된 경우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범으로서 소극가담 ○ 생계형 범죄 ○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 일반적 수사협조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후속범죄에 대한 피해 회복 또는 그 피해자의 처벌불원